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2-172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택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산가치 손실을 보정하고, 조례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향과 가지번호 등을 정비하여 법규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세제지원)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소음대책지역 내 1세대 1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40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하도록 함.(안 제10조)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고지서 1장당 공제 금액을 증액함.(안 제11조)

다. 그 밖에 조례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항과 가지번호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참조 : 재산세과, 전화 : 02-2620-3277, FAX : 02-2620-4425, E-mail : beauty@yang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5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6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7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 원인 경우는 4만2백 원으로 한다.

제8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소음대책지역 주택에 대한 감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

지서 1장당 1,600원

②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되, 시세가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를 따른다.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부칙<2020. 7. 9, 조례 제1504호>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제8조의 개정 규정은 부칙<2019. 7. 4, 조례 제1438호> 제2조제2항에 따라 2019년 7월 4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2022. 6.28, 조례 제1690호> 제2조에 따라 2022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